

특 허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2024. 1.

특 허 심 판 원
(심 판 정 책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9714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고,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서(별지 제24호) 제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심판청구 직권보정 사항으로 의견서 서식(별지 제24호) 제출 때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이 불필요하도록 함

나.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심판참고인의 선정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과 관련된 규정 신설

1) 심판장의 결정(직권사항)으로 의견청취를 결정하고, 참고인 선정시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회 등 공공성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2) 참고인은 서면으로 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심판장은 제출된 서면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사전 송달하고 서면 의견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부여하며,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하도록 함

3)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하고,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불산입함

다.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서 서식(별지 제24호) 정비

의견서 서식(별지 제24호)에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관련 의견서 제출시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이 불필요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특허법 제141조, 제154조의3(2024. 3. 15. 시행)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1. 29.~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 중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법 제66조의2제3항,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로 한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인을 선정한다.

③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①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 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2

4호서식을 통해 의견을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다.

제64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법 제154조의3제4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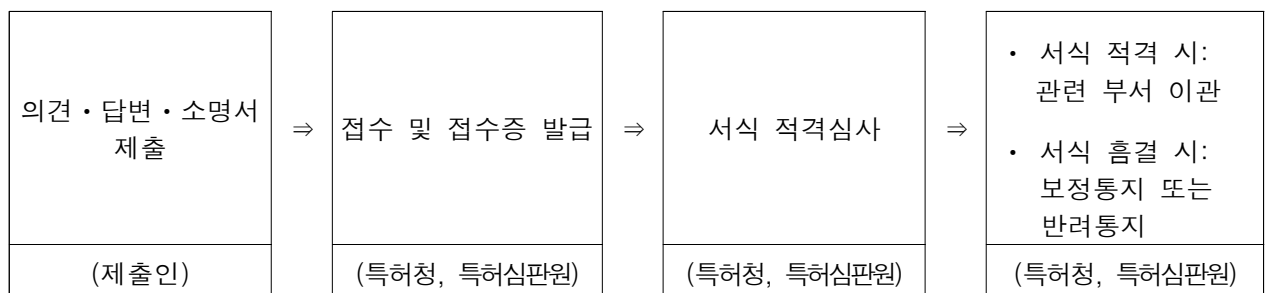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호(□) 중 “기타의견”을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기타의견”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류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국제출원일의 통지 또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통지를 받거나, 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14조의2, 제11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나,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답변	심판청구서 부분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당사자가 심판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답변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받고서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또는 정정불인정이유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재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후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반려이유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소신청사건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해 특허권자 및 참가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해 외국의 심사결과가 없다는 취지를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당사자가 심판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의3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기타의견	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출원시, 자진보정서 제출시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2. 처리절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견서) ----- ----- ----- ----- ----- ----- ----- -----.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u>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 ----- -- <u>법 제66조의2제3항,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u> ----- -----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u>제64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u> <u>심판장은 심판사건 심리에 있어서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여 공중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u>②심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참고인을 지정할 때</u>

<신 설>

는 공공단체, 공공단체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는 그 밖의 참고인을 선정한다.

③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참고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지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4조의3(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등) ①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고인은 심판원장이 정하는 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에 대한 의견제출기회(서면 또는 구술)를 부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을 통해 의견을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결 후 공개한다. 다만 비밀유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게시한

<신 설>

다.

제64조의4(참고인의 수당 등) ①

법 제154조의3제4항에 따라 참
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
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고인의 수당
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
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17